

**부속서 II**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분 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이행요건(제11.8조)

**유보내용** 투자

1. 대한민국은 투자의 설립 또는 인수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2007) 제4조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2007) 제5조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한을 유보한다. 다만, 대한민국은 즉시 미합중국에 그러한 조치를 채택하였다는 서면통지를 하고, 그러한 조치는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2007),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2007) 및 그 밖의 적용가능한 법에 규정된 절차적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나. 그 투자가 사회의 근본적 이익에 대하여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채택되거나 유지된다.

다.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마.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비례한다.

2. 제11.16조제1항에 따른 중재에 제기될 수 있는 청구를 저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다음의 청구를 제11장(투자)의 제2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있다.

가. 대한민국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조치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나. 청구인 또는 해당되는 경우 청구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대한민국 기업이 그 조치를 이유로 또는 그 조치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

그러한 청구의 경우, 제11장 제2절이 준용되며, 제11장 제1절상의 의무 위반 또는 위반주장에 대한 제11장 제2절상의 모든 언급은 이 유보항목이 없었다면 제11장 제1절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될 그 조치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그 조치가 제1항 가호 내지 마호에 열거된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음을 중재판정부가 만족하도록 입증한 경우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수 없다.

3. 제1항에 언급된 조치가 제13장(금융서비스)의 적용대상인 한도에서 이 유보항목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기존의 조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법률 제8380호, 2007.4.11)  
동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19826호, 2007.1.5)

**분 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투자

대한민국은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또는 자산의 이전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제21장(투명성)의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제13.9조(비합치 조치)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유보항목은 제13.2조(내국민 대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비합치조치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이 유보항목은 과거 민간기업이었으나 기업구조조정 과정의 결과로 국가가 소유하게 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공기업에는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의 지분 또는 자산의 매각 또는 처분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도 포함된다.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의 부속서 I 및 부속서 II상 약속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은 정부권한 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은 대한민국 법이 허용하는 특급배달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인 한도에서 제11.3조 또는 제12.2조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조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문단은 대한민국이 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제13.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유보항목은 제13.2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비합치조치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기존의 조치** 증권거래법 제203조(법률 제8315호, 2007.3.29)

**분 야** 토지취득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유보내용** 투자

대한민국은 외국인의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의 토지 취득은 계속 허용된다.

1. 외국인토지법 제2조상의 외국법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2. 아래의 정당한 사업목적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토지법상 외국법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나 외국법인의 지점인 경우. 단,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 가.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 나. 고위경영진의 주거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그리고
  - 다. 해당 법에 규정된 토지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대한민국은 외국인에 의한 농지취득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외국인토지법 제2조 내지 제6조(법률 제7297호, 2004.12.31)  
농지법 제6조(법률 제8179호, 2007.1.3)

**분 야** 총포·도검·화약류 및 유사 물품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총포·도검 또는 화약류의 제조·사용·판매·보관·운반·수입·수출 그리고 소지를 포함하여 총포·도검 및 화약류 분야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취약집단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소수 민족과 같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 취약집단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국가소유의 국가전자/정보시스템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현지주재(제12.5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국가 고유의 비밀정보 또는 정부의 규제기능 및 권한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수록한 모든 국가소유의 전자정보시스템의 관리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은 금융서비스 관련 지급 및 결제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분 야** 사회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현지주재(제12.5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 그리고 다음의 서비스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 또는 유지되는 사회 서비스인 한도에서 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소득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복지, 공공훈련, 보건, 그리고 보육.

분 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2.4조)
유보내용	<u>국경간 서비스무역</u>

대한민국은 GATS상 대한민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48, GATS/SC/48/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및 GATS/SC/48/Suppl.3/Rev.1)에 기술된 대로 GATS 제16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의무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으로만, 대한민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는 다음의 변경을 조건으로 한다.

가. “모든 분야”로 기술된 유보항목은 제외하고, 대한민국 부속서 I의 유보항목 중 관련의무란에 시장접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유보항목의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하여는 서비스공급형태 1, 2 및 3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 “제한 없음(None)”이라고 기재하고, 서비스공급형태 4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는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고 기재한다.

나. “모든 분야”로 기술된 유보항목은 제외하고, 대한민국 부속서 I상의 유보항목 중 시장접근 의무에 대한 제한사항을 기술한 유보항목의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하여는 그 제한사항을 해당 서비스공급형태에 대한 시장접근 열에 기재한다. 그리고

다. 부록 II-가에 기재된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는 부록 II-가에 적시된 바와 같이 수정된다.

이러한 변경은 대한민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의 시장접근 열에 기재된 GATS 제16조제2항바호 관련 어떠한 제한사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의 시장접근 열에 “제한 없음(None)”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제 12.6조에 의하여 수정된 대로의 제12.5조가 적용된다는 것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분 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서명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대한민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 서명되는 다음에 관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항공

나. 수산, 또는

다.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

**분 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서비스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편방향위성전송(DTH) 및 직접방송위성(DBS) 텔레비전 서비스 그리고 디지털오디오 서비스와 관련, 상호주의 조치의 적용을 이유로 또는 라디오 스펙트럼의 공유, 시장접근 보장 또는 내국민대우와 관련한 국제협정을 통하여 다른 국가의 인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운송서비스 - 철도운송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 서명되는 철도운송에 관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환경서비스 - 음용수 처리·공급서비스, 생활폐수 수집·처리 서비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서비스, 위생 및 유사서비스, 자연 및 경관보호서비스(환경영향평가 서비스는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이행요건(제11.8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다음의 환경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음용수의 처리 및 공급, 생활폐수의 수집 및 처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 그리고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환경영향평가서비스는 제외한다)

이 유보항목은 관련 법 및 규정에서 상기 서비스에 대하여 사적 공급이 허용되는 한도에서 민간 당사자간 계약에 따른 해당 서비스의 공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분 야** 원자력 에너지 - 원자력 발전, 핵연료의 제조 및 공급, 핵물질,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처분(사용·조사된 핵연료 처리 및 처분을 포함한다),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선 모니터링 서비스, 핵에너지 관련 서비스, 설계·유지 및 보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원자력에너지 산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에너지 서비스 - 원자력 발전을 제외한 발전, 송전·배전 및 전력 판매, 전력사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발전·송전·배전 및 전력 판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부속서 I 대한민국의 유보목록의 에너지산업(전력)과 관련된 유보항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전력산업에서의 외국소유 수준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이 유보항목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제11.8조제1항바호와 불합치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분 야** 에너지 서비스 - 가스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천연가스의 수입과 도매 유통, 그리고 인수기지  
와 전국 고압 주배관망의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  
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부속서 I 대한민국의 유보목록의 에너지산업  
(가스산업)과 관련된 유보항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가스산업  
에서의 외국소유 수준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분 야** 유통서비스 - 농축산물에 대한 중개서비스, 도매 및 소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이행요건(제11.8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쌀, 인삼, 그리고 홍삼과 관련하여

가. 중개서비스

나. 도매(수입을 포함한다) 서비스, 그리고

다. 소매서비스

**분 야** 운송 서비스 - 도로여객운송 서비스(택시 서비스 및 정기 도로여객운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택시 서비스 및 정기 도로여객운송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운송 서비스 - 도로화물운송 서비스(쿠리어 서비스와 관련된 도로운송 서비스는 제외한다)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국제해운회사에 의한 컨테이너화물 도로운송(카보타지는 제외한다.)과 쿠리어 서비스와 관련된 도로운송 서비스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은 도로화물운송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운송 서비스 - 내륙주운 서비스 및 우주운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내륙주운 서비스 및 우주운송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운송 서비스 - 저장 및 창고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쌀과 관련된 저장 및 창고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비독점 우편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다음의 사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군복무자 또는 이와 동등한 신분을 지닌 자가 우체국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그리고

나. 정보통신부장관이 그 부처에 속하는 차량 정수의 결정과 우체국에 그 차량을 배정함에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기존의조치** 우편법(법률 제8288호, 2007.1.26)

병역법(법률 제8243호, 2007.1.19)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 제19414호, 2006.3.29)



**분 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시장접근(제12.4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다음의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매체간 교차소유를 제한하는 조치

나.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의제외국인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최소 비율을 설정하는 조치. 이 호는 종합편성·보도 또는 흡쇼핑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지 아니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방송서비스 공급자의 이사가 대한민국 국민 또는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

라. 플랫폼사업자(예를 들어, 종합유선방송 또는 위성방송 사업자)가 지상파방송채널을 재송신하거나 공익채널을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조치

마.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연간 방송시간의 일정비율을 국내신규제작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하도록 요구하는 조치. 다만, 그러한 조치는 2007년 4월 30일 현재 미국산 애니메이션 콘텐츠에 허용되고 있는 시장 접근 수준을 증대하게 손상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sup>1)</sup>

바. 애니메이션을 주로 편성하거나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연간 방송시간의 일정비

1) 투명성 목적상, 방송법(법률 제8301호, 2007. 1. 26)에 따라 방송위원회(KBC)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연간 방송시간의 10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일정비율을 국내신규제작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으로 편성토록 정할 수 있다. 2007년 4월 30일 현재 방송위원회는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및 서울방송(SBS)에 대해 연간 방송시간의 1000분의 10, 그리고 교육방송(EBS)에 대해 연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을 국내신규제작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하도록 요구한다.

율을 국내 신규 제작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하도록 요구하는 조치. 다만, 그 조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부속서 I 대한민국의 유보목록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방송서비스 유보항목에서 규정된 수준보다 더 많은 외국 콘텐츠를 편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사. 외주제작 콘텐츠 쿼터, 국내물에 대한 제작비 요건 또는 주시청시간대 쿼터를 부과하는 조치. 다만, 그러한 쿼터 또는 요건을 종합유선방송 또는,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적용할 경우, 그 조치는 그러한 사업자에 대하여 부속서 I 대한민국의 유보목록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방송서비스 유보항목에서 규정된 수준보다 더 많은 외국 콘텐츠를 편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아.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대한민국 콘텐츠를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조치. 다만, 그러한 요건이 소비자의 수요가 미미한 비디오의 보유로 귀결되어서는 아니된다. 또는

자. 특정 분야에서 외국방송 재송신 서비스(외국의 케이블 채널을 포함한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 다만, 이는 부속서 I 대한민국의 유보목록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방송서비스 유보항목에 규정된 그 분야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조치가 철폐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호는 이 협정 서명일 이전에 승인된 외국방송 재송신 서비스의 공급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러한 공급자는 방송법(법률 제8301호, 2007.1.26 및 결정 제 2005-18-144호, 2005.4.26)에 따라 자신의 서비스를 계속 공급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가. **외제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정부나 외국인이 합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외국정부나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나. **외주제작 콘텐츠**라 함은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제작사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제작된 콘텐츠를 말한다. 그리고

다. **주시청시간대 쿼터**라 함은 일정 비율의 대한민국 콘텐츠를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제공하도록 하는 요건을 말한다.

**분 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통신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시장접근(제12.4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1. 제2항을 조건으로 하여, 대한민국은 방송 및 통신 분야의 미래 규제개혁의 일환으로서 또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의 논의를 고려하여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와 관련하여,
  - 가.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는 모든 그러한 조치는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 분류에 대한 국내 정책 결정에 따라 적용된다. 그러한 조치는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각 경우에 맞게, 부속서 I 대한민국의 유보목록의 통신서비스 유보항목의 기간 통신사업자에 적용되는 조치 또는 부속서 I 대한민국의 유보목록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서비스 유보항목상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적용되는 조치보다 불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한 조치에는 제11.12조제1항 다호가 적용된다. 그리고
  - 나. 국내 콘텐츠 쿼터를 부과하는 모든 그러한 조치는 부속서 I 대한민국의 유보목록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서비스 유보항목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허용된 비율보다 높지 않도록 대한민국 콘텐츠의 수준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에는 제 11.12조제1항 다호가 적용된다.

투명성 목적상,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다음 분야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규제체계를 개혁할 예정이다.

가. 규제기구개편 및 새로운 법적 체계 구축

나. 산업분류시스템 검토

다. 서비스공급자에 대한 면허 및 승인

라. 소유 및 교차소유 시스템

마. 사업행위에 대한 규제

바. 기술 규제 개선

사. 보편적 서비스 실현, 그리고

아. 융합 시대에 있어서의 공익 프로그램에 관한 이슈 검토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라 함은 당해 서비스 공급자가 소유 또는 통제(임차를 포함한다.)하는 전용 전송 용량을 통하여 최종이용자에게 공급되는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를 말하며,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텔레비전(IPTV)과 양방향 방송을 포함한다.

**분 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시청각서비스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이행요건(제11.8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영화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특혜를 주는 어떠한 공동제작 약정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공동제작 약정에 따라 제작된 공동제작물에 부여되는 공식 공동제작물 지위는 공동제작 약정의 대상이 되는 작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분 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 및 시청각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이행요건(제11.8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방송 또는 시청각 프로그램이 대한민국 콘텐츠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대한민국은 이 유보항목이 부속서 I 대한민국의 유보목록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방송서비스 유보항목 또는 부속서 II 대한민국의 유보목록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방송 및 통신 서비스 유보항목과 불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

**분 야** 사업 서비스 - 부동산 서비스(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는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이행요건(제11.8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를 제외한 부동산 개발·공급·관리·판매 및 임대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사업서비스 - 지급불능 및 법정관리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지급불능 및 법정관리서비스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대한민국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기업구조조정조합, 그리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를 포함한 기업구조조정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제13장(금융서비스)에서의 권리와 의무에 따른 현행의 합법적 투자은행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분 야**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이행요건(제11.8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의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콘텐츠 또는 그 장르가 대한민국 소비자들에게 쉽게 이용 가능하지 아니하다고 대한민국 정부가 판단할 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그러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거부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리를 유보한다. 대한민국 소비자를 겨냥한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그러한 콘텐츠의 이용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리를 유보한다.

위 문단에 의거하여 채택되는 어떠한 조치도 제21장(투명성)의 규정과, 적용가능한 경우 12.8조(규정의 개발 및 적용에서의 투명성)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기초해야 하며, 필요한 이상으로 교역 제한적이거나 부담스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라 함은 인터넷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전송유형에 상관없이 스트리밍 오디오 콘텐츠, 영화 또는 기타 비디오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나 이 협정 발효일 현재 방송법에 정의된 방송 서비스나 부속서 II 대한민국의 유보목록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방송 및 통신서비스 유보항목에서 정의된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분 야** 사업서비스 - 지적측량 서비스 및 지적도제작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지적측량 서비스 및 지적도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사업 및 환경 서비스 -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판정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판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에는 공식적인 검사 또는 테스트를 받기 전에 생산자를 대신하여 실시되는 검사 또는 테스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분 야** 사업서비스 - 농업·수렵·임업 및 어업 부수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유전적 개량, 인공수정, 벼 및 보리 도정,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과 관련된 제반 활동 등을 포함한 농업, 임업 및 축산업 부수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대한민국은 농협·산림조합 및 수협에 의한 농업·수렵·임업 및 어업 부수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어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유보내용 투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행위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신문 발행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신문의 발행(인쇄 및 배포를 포함한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교육서비스 - 유아·초등·중등·고등 및 기타교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유아·초등 및 중등교육, 의료·보건관련 고등교육, 유아·초등 및 중등교원양성 고등교육, 법학전문대학원, 모든 교육 수준의 원격교육(학점, 졸업장 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성인 교육 서비스는 제외한다.), 그리고 기타교육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은 해외용도를 위한 교육 테스트의 운영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어떠한 사항도 국내 교육정책에 따라 교육 테스트를 선택하고 적용하거나, 학교 교육과정을 규제하는 대한민국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분 야** 사회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372호, 2007.4.11)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8372호, 2007.4.11)에 규정된 의료기관, 약국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와 그 법률에서 특정하고 있는 지리적 지역에 대한 원격의료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우대조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분 야** 레크리에이션·문화 및 스포츠서비스 - 영화 진흥,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이행요건(제11.8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영화의 진흥, 광고 또는 후반제작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레크리에이션·문화 및 스포츠서비스 - 박물관 및 기타 문화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문화재의 발굴, 감정 또는 매매를 포함한 문화재의 보존 및 복원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기타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유보내용 투자

대한민국은 농어촌지역 관광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법률 서비스 - 외국법자문사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1. 대한민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어떠한 유형으로라도 대한민국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자격 부여·승인·등록·허용 및 감독 그리고 그 밖의 요건에 대한 제한

나.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대한민국 변호사·법무회사(로펌)·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와 동업·상사연합·제휴 또는 법적 유형을 막론하고 그 밖의 어떠한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대한 제한

다.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법률전문가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가 대한민국 내에서 대한민국 변호사·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를 고용하는 데 대한 제한, 그리고

라. 외국법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적 실체의 이사회 의장에 대한 것을 포함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미합중국 법무회사(로펌)가 대한민국에 대표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미합중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관할지역에 관한 법

및 국제공법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나. 이 협정 발효일 후 2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대한민국 법무회사(로펌)와 특정한 협력약정을 체결하여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 이 협정 발효일 후 5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미합중국 법무회사(로펌)가 대한민국 법무회사(로펌)와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한민국은 그 합작투자기업의 의결권 또는 지분 비율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러한 합작투자기업은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대한민국 변호사를 파트너 또는 소속 변호사로 고용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은 최소한 제2항에서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채택한 조치를 유지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미합중국 법무회사(로펌)**라 함은 미합중국법에 따라 설립되고 본점 사무소가 미합중국 내에 있는 법무회사(로펌)를 말한다.

**분 야** 전문직 서비스 - 외국공인회계사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1. 대한민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가. 외국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대한민국 공인회계사를 고용하는 데 대한 제한
  - 나. 외국 공인회계사가 대한민국 내에서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제한, 그리고
  - 다. 공인회계 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적 실체의 이사회 의장에 대한 것을 포함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 가.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다음을 허용한다.
    - 1) 미합중국 내에 등록된 미합중국 공인회계사 또는 미합중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 대한민국에 설립한 사무소를 통하여 미합중국 또는 국제 회계법 및 기준에 대한 회계컨설팅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그리고
    - 2) 미합중국에 등록된 미합중국 공인회계사가 대한민국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것
  - 나. 이 협정 발효일 후 5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미합중국 내에 등록된 미합중국 공인회계사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대한민국 회계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대한민국 공인회계사가 대한민국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한다. 그리고
  - 2) 미합중국에 등록된 미합중국 공인회계사 1인은 대한민국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10퍼센트 미만까지 보유한다.
3. 대한민국은 최소한 제2항에서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채택한 조치를 유지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미합중국 회계법인**이라 함은 미합중국법에 따라 설립되고 그 본점 사무소가 미합중국에 있는 회계법인 또는 파트너십을 말한다.



**분 야** 전문직 서비스 - 외국세무사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1. 대한민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외국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대한민국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고용하는 데 대한 제한

나. 외국 세무사가 대한민국 내에서 세무조정 및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제한, 그리고

다. 인증된 세무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적 실체의 이사회 의장에 대한 것을 포함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대한민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 아래 다음을 허용한다.

1) 미합중국 내에 등록된 미합중국 세무사 또는 미합중국 법에 따라 설립된 미합중국 세무법인이 미합중국 또는 국제 세법 및 세제에 대한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 그리고

2) 미합중국 내에 등록된 미합중국 세무사가 대한민국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는 것

나. 이 협정 발효일 후 5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미합중국 내에 등록된 미합중국 세무사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대한민국 세무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대한민국 세무사가 대한민국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한다. 그리고
- 2) 미합중국에 등록된 미합중국 세무사 1인은 대한민국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10퍼센트 미만까지 보유한다.

3. 대한민국은 최소한 제2항에서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채택한 조치를 유지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미합중국 세무법인**이라 함은 미합중국 법에 따라 설립되고 그 본점 사무소가 미합중국에 있는 세무법인 또는 파트너십을 말한다.

**분 야** 사업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2.2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은 통제되는 물품, 소프트웨어와 기술의 수출 및 재수출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오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인만이 그러한 물품,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의 수출 또는 재수출을 위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협정 서명일 현재 대한민국은 이 유보항목과 관련된 조치를 개정하는 과정에 있다. 양 당사국은 이 개정 과정이 끝난 이후, 이러한 개정에 비추어 이 유보항목의 수정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할 것에 동의한다.

**기존의 조치** 기술개발촉진법(법률 제7949호, 2006.4.28)

원자력법(법률 제7806호, 2005.12.30)

대외무역법(법률 제8356호, 2007.4.11)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7-3호(2007.4.12)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51호(2007.4.12)

관세법(법률 제8136호, 2006.12.30)

**분 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유보내용** 투자

대한민국은 제12.1조(적용범위)제6항에서 정의된 바에 따라, 예를 들어 법집행, 교정서비스와 같이 정부권한의 행사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은 다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계약을 체결한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 투자, 또는

나. 제13장(금융서비스)이 적용되는 한도에서 대한민국에 의하여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

**분 야** 운송서비스 - 해상여객운송과 연안해상운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이행요건(제11.8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아래 조치를 포함하여 국제해상여객운송 서비스의 제공, 연안해상운송 및 대한민국 선박의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국제해상여객운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획득하여야 한다.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한다.

연안해상운송은 대한민국선박을 위해 유보된다. 연안해상운송은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항구간 해상운송을 포함한다. **대한민국선박**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가. 대한민국 정부, 공기업 또는 해양수산부 산하에 설립된 기관이 소유한 선박
- 나.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 다. 대한민국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소유한 선박
- 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그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 임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소유하는 선박.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내항 항만활동에 관한 조치는 제 23.2조(필수적 안보)를 조건으로 한다.

## 부록 II-가

다음 분야의 경우, GATS상 대한민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48, GATS/SC/48/ 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그리고 GATS/SC/48/Suppl.3/Rev.1)에 규정되어 있는 GATS 제16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의무는 다음에 기술된 대로 개선된다.

분야/하위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b>연구개발 서비스 :</b> 가. 자연과학에 대한 연구개발 서비스  나. 사회과학 및 인문학에 대한 연구개발 서비스  다. 학제간 연구개발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서비스공급형태 1,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  서비스 공급형태 1, 2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b>시장조사 및 대중여론 조사 서비스</b>	서비스 공급형태 1,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
<b>광업 부수 서비스</b>	서비스 공급형태 1,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

<p>다음 분야의 경우, GATS상 대한민국의 구체적 약속 양허표(GATS/SC/48, GATS/SC/48/ Suppl.1, GATS/SC/48/Suppl.1/Rev.1, GATS/SC/48/Suppl.2, GATS/SC/48/Suppl.3 그리고 GATS/SC/48/Suppl.3/Rev.1)에 규정되어 있는 GATS 제16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의무는 다음에 기술된 대로 개선된다.</p>	
분야/하위분야	시장접근 개선사항
포장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2에 대한 제한을 "약속 안함(Unbound)"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
컨벤션 대행 서비스 이외의 컨벤션 서비스	서비스 공급형태 1, 2, 3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
<p><b>관광 및 여행관련 서비스:</b></p> <p>가. 엔터테인먼트가 없는 음료제공 서비스</p> <p>철도 및 항공운송 관련 시설의 엔터테인먼트가 없는 음료 제공 서비스 제외</p> <p>나. 여행 대행 서비스</p> <p>다. 관광객 안내 서비스</p>	<p>서비스 공급형태 1에 대하여 "약속 안함(Unbound)*", 서비스 공급형태 2, 3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p> <p>서비스 공급형태 1, 2, 3에 대하여 "제한 없음(None)", 서비스 공급형태 4에 대하여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the Horizontal Commitments section)"이라는 새로운 약속 삽입</p> <p>서비스 공급형태 3에 대하여 "오직 여행사만이 관광객 안내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용된다"에서 "제한 없음(None)"으로 수정</p>